

울산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0가합17067 판결 [계약금등 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동현

피고1. B중친회

2. 망 C의 소송수계인 D

3. 망 C의 소송수계인 E

4. 망 C의 소송수계인 F

5. 망 C의 소송수계인 G

6. 망 C의 소송수계인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변론 종결2023. 3. 16.

판결 선고2023. 4.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중친회는 285,704,810원 및 그 중 142,852,405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2023. 4.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2,852,405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2023. 4.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은 각 785,900원 및 그 중 392,950원에 대하여는 2014.

8. 31.부터 2023. 4.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2,95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3.부터 2023. 4.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 한다)는 285,70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E, F, G, H은 각 785,9001) 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종합체육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6. 6.경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울산 북구 I 일원에 체육시설인 골프장(J골프장)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2007. 12. 27.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울산광역시가 2008. 1.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 피고 종친회 및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종친회 및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매대금 29억 원(계약금 1억 4,500만 원은 당일 지급, 중도금 10억 1,500만 원은 2008.

2. 29. 지급, 잔금 17억 4,000만 원은 2008. 4. 30.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금으로 피고 종친회에게 142,852,405원, C에게 1,964,7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9. 4. 울산광역시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 입안을 제출하였고, 울산광역시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거쳐 2009. 2. 19.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자금사정 및 원고 대표이사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2014. 2. 19.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 대표이사 L가 제안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에 관한 사업권의 양도금액은 일금 칠십억 원(₩7,000,000,000)으로 하기로 한다.

2. 지불조건 및 기타 협의사항을 양수자(K 대표이사 M)가 신설한 법인과 양도양수계약 시 협의하기로 한다.

3. 상기 협약 체결일로부터 양수자가 인허가 및 사업시행, 건설 등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자(원고)는 동의하기로 한다.

마. K은 2014. 3. 17.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가 N과 이 사건 협약 제2조에 따른 내용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4. 2. N에게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N에게 도달하였다.

바. N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2014. 5. 2.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2014. 5. 8.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를 각 제출하였고, 2014. 7.경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4. 8.경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완료하였다.

사. C은 2014. 6. 30. 별지 목록 기재 순번 8 내지 11 토지를 N에게 매도한 후 2014. 10. 1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종친회는 2014. 8. 30.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7 토지를

N에게 매도한 후 2014. 10. 13. 및 1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피고 종친회는 2019. 3. 4.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의 지분 143,306분의 106,141을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게 매도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기일이 경과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억 4,5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몰취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 종친회는 2019. 5. 30. O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N은 2019. 5.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내지 11 토지를 O에게 매도한 후 2019. 5.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2019. 5. 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세화로부터 2019. 5. 2.자로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였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2019. 5.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다.

차.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9. 6. 28. O를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기간을 2021. 12. 31.까지로, 면적을 755,372m²에서 755,732m²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2019. 7. 4. 이를 각 고시하였다.

카. 원고는 2019. 6. 24. 울산지방법원에 K과 N을 상대로 이 사건 협약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9가합711호), 울산지방법원은 2020. 2. 13. '원고와 K, N은 이 사건 협약이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다만 위 협약의 소멸 확인에 그치는 것일 뿐 이 사건 사업권의 소유 여부 등에 관한 판단과는 무관한 것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20. 3. 4.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타. 원고는 피고 종친회 및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C은 소송계속 중이던 2021. 10.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 D, E, F, G, H(이하 위 5명을 합하여 '피고 수계인들'이라 한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종친회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 사. 및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N 및 O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종친회와 C은 위 지급기일 이후 2019년경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종친회는 2019. 3. 4.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2. 19. N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거절로 인하여 2019. 3. 4.자 내용증명의 도달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적법하게 물취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4. 2. 19. K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협약체결 이후 N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등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한 사실, 원고가 2019년경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K 또는 K이 설립한 N일 뿐 피고 종친회나 C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추후 본계약을 체결하자는 이른바 MOU의 성격을 갖는데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업권을 곧바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점, ③ 그 마저도 원고는 2014. 4. 2.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으며, 원고가 K과 N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양수협약무효확인 소에서 '원고와 K, N은 이 사건 협약이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점, ④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종국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해야 하고, 자기의 채무의 이행에 상대방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준비를 완료한 다음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의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협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완료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 기타 상대방의 협력과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6438 판결 등 참조).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준비하여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인데(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종친회와 C이 원고에게 서면으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차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통지에는 원고가 잔금지급 기일이 경과한 후 2019. 3. 4.경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 종친회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제공 의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피고 종친회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을 제2호증)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그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잔금 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는 것이 필요한데, 피고 종친회가 그와 같이 수령을 최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종친회와 C이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장 송달에 의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바 없으므로, 피고 종친회 및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종친회 및 C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대부분3)을 N 및 O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해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피고 종친회 및 C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종친회 및 C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종친회 및 C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써 이미 수령한 계약금(피고 종친회 142,852,405원, C 1,964,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 종친회는 142,852,405원, C은 1,964,7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의 계약금반환채권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종친회 및 C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종친회는, 원고의 채권자인 P이 피고 종친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종친회는 위 압류명령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원고에게 압류금액 상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P은 2021. 3. 2. 원고가 피고 종친회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서 청구한 채권 중 126,165,886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결정(울산지방법원 2020타채124908)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명령이 그 무렵 피고 종친회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나, 채권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등 참조), 피고 종친회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후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종친회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 종친회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준 시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약 11년이 경과한 2019. 5. 30.경인 점, ③ 피고 종친회 스스로 2019. 3. 4.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0. 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당기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아 피고 종친회나 C으로 하여금 위 해제권이 더 이상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1) 피고 종친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42,852,405원,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예정액 142,852,405원 합계 285,704,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계약금 142,852,405원에 대하여는 계약금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3. 5.부터 피고 종친회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예정액 142,852,405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종친회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피고 종친회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수계인들은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각 785,900원[= 3,929,500원(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964,750원 + 손해배상으로 손해배상예정액 1,964,750원) × 상속지분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계약금 392,950원(= 1,964,750원 × 상속지분 1/5)에 대하여는 계약금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31.부터 피고 수계인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예정액 392,950원(= 1,964,750원 × 상속지분 1/5)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13.부터 피고 수계인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도 2019. 3. 5. 또는 2014. 8.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채무자는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재우

판사이주항

판사이충원

별지

1) 원고의 2021. 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1,913,49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원고의 2022. 5. 6.자 준비서면 제8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청구 금액은 원고의 2020.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기재와 같이 3,929,5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1,913,490원은 3,929,500원의 오기로 본다.

2)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으나, C의 상속인들인 피고 D, E, F, G, H의 소송수계 신청이 있었으므로, 위 수계인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청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의 지분 143,306분의 117,260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종친회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의 지분 143,306분의 106,141을 O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종친회가 여전히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줄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전체를 매수한 점, 현재 O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전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